

[별표1]

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(제11조 관련)

감면대상자	감면율 (일반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)	비고
국민 및 그 수행자	100분의 100	
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	100분의 100	
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(단, 외국인은 만18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)	100분의 100	
국·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	100분의 100	
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	100분의 100	
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·중·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)	100분의 100	
한복을 착용한 자	100분의 100	별표2참고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	100분의 100	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	100분의 100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	100분의 100	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	100분의 100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	100분의 100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	100분의 100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	100분의 100	
「관광진흥법」 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	100분의 100	
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	100분의 100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	100분의 100	
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	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율	
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	100분의 100	
현역 군인(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)	100분의 100	
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카드를 소지한 부모	100분의 100	
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	100분의 100	
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	100분의 50	
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	100분의 100	
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	100분의 100	
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	100분의 100	

※ 비고

- 1.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창덕궁 후원 적용
- 2. ‘한복을 착용한 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[별표2] ‘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’을 적용
- 3. 감면대상자는 매표 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